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17
----------	-------

발의연월일 : 2026. 8. 10.

발 의 자 : 김미애 · 이인선 · 서명옥
김태규 · 엄태영 · 조정훈
백종헌 · 이종욱 · 안상훈
최보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관할 면적,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개입, 사후관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5호 중 “사후관리”를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중 “성과평가”를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 실적에 대하여”를 “설치·운영 실태 및 업무 실적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를 “평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을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절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인력 보강, 운영방식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는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생 략)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5. 피해아동 가정의 <u>사후관리</u> 6. · 7. (생 략)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 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 6. · 7. (현행과 같음)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u>성과</u> <u>평가</u>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u>업무 실적</u> <u>에 대하여</u> 3년마다 <u>성과평가를</u> <u>실시하여야</u> 한다. <u><신 설></u>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u>평가</u> <u>등</u>) ① ----- -----설치 · 운영 실태 및 업무 실적을----- -----평가하여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평가 결과</u>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u>확충 또는 개선이 필요</u>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 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u>추가 설치, 인력 보강,</u> <u>운영방식 개선 등 필요한 조치</u>

<u><신 설></u> ② <u>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를 권고할 수 있다.</u> ③ <u>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u>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u> <u>· 방법 · 절차</u>----- -----.
--	--